

의안번호	2208618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5.3.20.
추 계 번호	25B125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이 완화되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의 신청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5억 9,200만원~63억 7,000만원(연평균 3억 1,800만원~12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1: 2026년 3억 600만원, 2030년 3억 3,100만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2: 2026년 6억 1,200만원, 2030년 6억 6,200만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3: 2026년 12억 2,400만원, 2030년 13억 2,5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306	312	318	325	331	1,592	318
시나리오2	612	624	637	649	662	3,185	637
시나리오3	1,224	1,248	1,273	1,299	1,325	6,370	1,27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22조의2 신설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한 특 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출자법인(같은 법 제18조제1항1호에 따른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제1항) 1.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재량규정
3	안 제22조의5(장애 인 표준사업장의 인 증 및 인증취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제2항) 2. 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의무규정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애에 발생할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
2	안 제22조의2 신설(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	• 공식추계 - 본문참조
3	안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	• 미대상 -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11. 기준,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²⁾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 근로자의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있어 각각 출자한 비율만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³⁾
 - 그러나 현행법상 계열회사 간은 공동출자 할 수 없기 때문에⁴⁾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함
-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 및 운영하기 위한 목적 등 일정한 요건⁵⁾을 충족하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 5) 1.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므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⁶⁾
 - (사업목적)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비용을 지원
 - (사업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
 - (사업내용) 작업시설, 편의 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을 지원
 - (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유형) 일반형, 자회사형, 사회적경제형⁷⁾
 - ※ 일반형: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이러한 고용 의무를 7년 이상 유지하는 표준사업장
 - ※ 자회사형: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 중 모회사가 표준사업장(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모회사에 산입하는 표준사업장
 - ※ 사회적경제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3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예비인증 포함)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표준사업장

[표 2] 2024년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명)

구 분	사업체수	지원금액	평균지원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일반	142	35,406	249	1,221
자회사형	42	13,123	312	450
사회적경제	10	500	50	20
계	194	49,029	253	1,691

자료: 고용노동부

6)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코드: 1453-304)의 내역사업임

7) 2025년에는 도약지원형이 신설되었으며, 도약지원형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일반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선발하여 작업시설, 편의시설, 출·퇴근용 승합차,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 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의 신청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재정지출 규모는 기추진 중인 재정사업의 확대 규모에 따라 결정됨

- 다만,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동 내역사업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더라도 재정지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동 내역사업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의 신청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소요로 지원단가에 신청 규모를 적용하여 산출

- (지원단가) 2025년 계획액 기준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의 단가(3억원⁸⁾)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표 3] 2025년 기준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 계획액 산출내역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516억원
1) 도약지원형 : 10개소 × 3억원 = 30억원
2) 일반 및 자회사 등 : 162개소 × 3억원 = 486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 (신청 규모)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이에 해당함
- 기준선에 해당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는 2025년 계획 물량(162개)을 토대로 산출하며, 이 중 자회사형의 규모는 2024년 기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원 비율($22.8\% \approx 42 / (142 + 42)$)을 적용하여 산출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2025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원 예상 규모(37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⁹⁾

8) 일반 및 자회사형 기준

9) 사업장의 수는 반올림으로 산출

- ※ 시나리오1: 추계기간 동안 2025년 지원 예상 물량에서 1% 증가
- ※ 시나리오2: 추계기간 동안 2025년 지원 예상 물량에서 5% 증가
- ※ 시나리오3: 추계기간 동안 2025년 지원 예상 물량에서 10% 증가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완화에 따라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의 신청이 증가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2026년 3억 600만원, 2030년 3억 3,100만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2: 2026년 6억 1,200만원, 2030년 6억 6,200만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3: 2026년 12억 2,400만원, 2030년 13억 2,500만원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건)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원단가(A)		306	312	318	325	331	—	—
신청 규모	시나리오1(B1)	1	1	1	1	1	—	—
	시나리오2(B2)	2	2	2	2	2	—	—
	시나리오3(B3)	4	4	4	4	4	—	—
추가 재정 소요	시나리오1 (C1=A×B1)	306	312	318	325	331	1,592	318
	시나리오2 (C2=A×B2)	612	624	637	649	662	3,185	637
	시나리오3 (C3=A×B3)	1,224	1,248	1,273	1,299	1,325	6,370	1,274

주: 사업장의 수는 올림으로 산출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